오산세교2 7단지(A-6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1. 02.)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02(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1.02.)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미계약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오산시 송로 11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주택 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기타공용	주차장							
26D	26.35	14.5722	2.6982	11.7761	55.3965	242	0	60	701,702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23.08
26D (주거약자용)	26.35	14.5722	2.6982	11.7761	55.3965	14	0	10	702		
26DB	26.13	14.6958	2.6756	11.6778	55.1792	5	10	-	701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적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6D, 26D (주거약자용)	「가」군	2,705,000	135,250	2,569,750	53,890	(+) 4,000,000	6,705,000	33,890
						(-) 1,000,000	1,705,000	56,800
	「나」군	15,784,000	789,200	14,994,800	116,680	(+) 14,000,000	29,784,000	46,680
						(-) 12,000,000	3,784,000	151,680

-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6.11.02.)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02.)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table>
<tr><td>무주택</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세대
구성원</td><td>■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tr><th>세대구성원</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 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소득</td><td>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월평균 소득>
<table>
<tr><th rowspan="2">가구원수</th><th colspan="2">기본 조건</th><th>자격완화 조건</th></tr>
<tr><th>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th><th>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th><th>월평균 소득 150%</th></tr>
<tr><td>1인가구</td><td>2,669,354원 이하</td><td>3,432,027원 이하</td><td>5,720,045원 이하</td></tr>
<tr><td>2인가구</td><td>3,519,762원 이하</td><td>4,693,016원 이하</td><td>8,799,405원 이하</td></tr>
<tr><td>3인가구</td><td>4,084,215원 이하</td><td>5,717,900원 이하</td><td>12,252,644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4,401,101원 이하</td><td>6,161,541원 이하</td><td>13,203,303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4,663,493원 이하</td><td>6,528,890원 이하</td><td>13,990,478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4,953,132원 이하</td><td>6,934,384원 이하</td><td>14,859,395원 이하</td></tr>
<tr><td>7인가구</td><td>5,242,771원 이하</td><td>7,339,879원 이하</td><td>15,728,312원 이하</td></tr>
</tabl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td></tr>
<tr><td>자산</td><td>
1. 자산기준 적용 신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가산비율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td></tr>
</tabl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산정방법</th></tr>
<tr><td colspan="2">소득</td><td>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td></tr>
<tr><td rowspan="3">총자산</td><td>부동산</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tr>
<tr><td>자동차</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r><td>금융
자산</td><td>•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td></tr>
</table>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등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오산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
1.오산시 거주기간 (20점)	1년 미만	1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02.)까지 연속하여 오산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오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14	
	5~10년 미만	16	
	10~15년 미만	18	
	15년 이상	20	
2. 공급신청자 연령 (20점)	40세 미만	14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50세 미만	16	
	50~60세 미만	18	
	60세 이상	20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 포함) (20점)	1~2인	1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16	
	4인	18	
	5인 이상	20	
4. 소득*수준 (20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50% 이하	20	신청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50% : 1인은 70%, 2인은 60%) (70% : 1인은 90%, 2인은 80%)
	70% 이하	15	
	<소득 기준>		

가구원수	150%	70% (1인90%, 2인80%)	50% (1인70%, 2인60%)
1인가구	5,720,045원 이하	3,432,027원 이하	2,669,354원 이하
2인가구	8,799,405원 이하	4,693,016원 이하	3,519,762원 이하
3인가구	12,252,644원 이하	5,717,900원 이하	4,084,215원 이하

5. 가점 (10~20점) ※ 신청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유형 3가지 해당)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18 (유형 2가지 해당)	
		16 (유형 1가지 해당)	
		10	* 위 유형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수급자	10 (유형 하나 이상 해당)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5.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완화모집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완화모집 입주자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오산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 당해주택건설지역 (오산시) 거주기간	10년이상	5
	5년이상~10년미만	3
	1이상~5년미만	2
2. 공급신청자 나이	만75세이상	3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본인 포함)	2인 이상	2
	1인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청약 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예비입주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청약 신청 **(PC 또는 모바일)** **2026.11.16(월)10:00 ~** **11.18(수)16: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신청내역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기간동안에 가능** **(현장접수)** **2026.11.17(화)** **당일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제외) **※ 65세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신청장소〕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2026.11.26(목)** **16: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상단『청약』 →『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2026.11.27(금)** **~** **2026.12.03(목)** **제출방법 : 온라인및등기우편** **※ 우편 보내실곳:** **(우)18114**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 빠른등기우편은 2026.12.03(목)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처리** **※ 신청단지,신청접수번호 필히 기재**	**2027.02.23(화)**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상단『청약』→『청약결과 확인』『당첨/낙찰 결과조회』 클릭 **또는** **※ ARS : 1661-7700**	당첨자 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현장접수시 공고문 본문 [8. 신청서류] 16P~18P 구비서류 항목 참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합니다.**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직접 조회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11.26(목)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청약 탭 내『청약결과 확인』 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8.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등기우편은 '26.12.03(목)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7. 신청방법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11.16(월) 10:00 ~ '26.11.18 (수)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접수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청약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센터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 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 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11.16(월) 10:00 ~ '26.11.18(수)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 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 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11.17(화) 업무시간(10:00~16:00)내 가능**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신청 장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3층 (LH오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 **접수현장에서 청약신청에 따른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시 반드시 아래 **준비서류〔공고문 (본문 8.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의 경우 청약접수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므로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안내

신청장소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3층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대중 교통편	**(지하철)** 오산대역 1번 출구(도보 5분 거리) **(버 스)** 스마트시티센터앞 하차 : 8, 32, 201, C1, C2, 5200, 8302, M5532
지 사 약 도	
※ 건물 내 지하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이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11.26(목) 16시 이후)**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6.11.27(금) ~ 2026.12.03(목)**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우편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 클릭 →『청약결과확인』 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 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기간: 2026.11.27(금) ~ 2026.12.03(목)**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접수 불가)**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8114)
- 등기우편 서류제출은 마감일인 **2026.12.03(목)**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전화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접수자 : 현장 신청자의 경우 청약접수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므로 서류제출 기간 내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8.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1.0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MyMy서비스 이용 가이드 영상 참고하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LH 공식 Youtube 채널에 있는 MyMy서비스 가이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❶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❷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신청자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제출 대상 서류 中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시 :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신청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신청자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주의사항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참고 P.16~P.18)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X	LH 청약센터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필수]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입주자격 완화 관련 확약서 [필수]		X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LH 청약센터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필수]**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O **(전자서명)**	LH 청약센터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상세**) **[필수]**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상세가족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O	행정 복지 센터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전자서명)**	
해 당 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상세**)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오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O	행정 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필수]**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O	행정 복지 센터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출 >** •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X	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O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X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O	국가보훈부/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X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O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X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X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X	성평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보호종료확인서	X	정부24(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시설 퇴소예정자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확인서(재원증명서 등 가능)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X	국방부

9.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2027.02.23(화)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LH 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계약방법은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으로 체결 가능**하며, 공가여부 및 입주가능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개별안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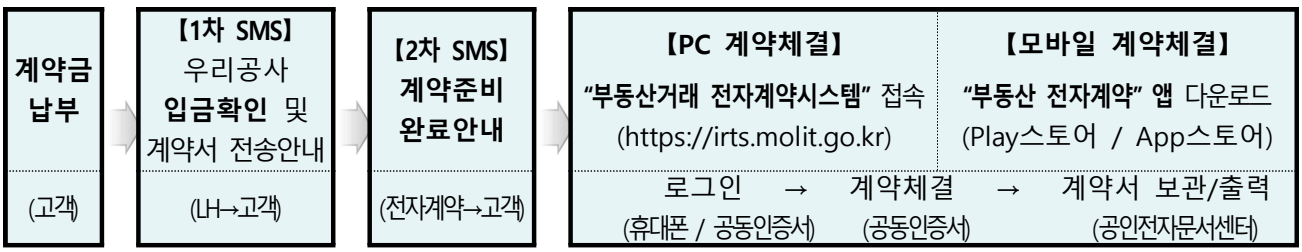
■ **전자계약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재계약시 소득초과 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허용하나 재계약 만료 시점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계약할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 또는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여건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북측으로 약 2.3km 지점에 금암변전소가 설립될 예정이며, 남동측으로 약 1.1km 지점에 열병합발전소(DS파워), 약 1.4km 지점에 오산시 하수처리장(오산환경사업소)이 위치해 있습니다.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702동) 도로 경계 완충녹지 너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완충녹지를 관통하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사업부지 북서쪽 1.4km 직선거리에 세원화학, 대상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건물 동측 약 1.3km 직선거리에 오산역(수도권 1호선), 오산역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터미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 하부 지상1~4층은 사회적기업, 관리사무소/경로당, 작은도서관, 택배보관함 및 우편물수취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702동 지상 3~4층은 주거약자형 세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세대경계벽 제외)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할 경우,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을 사용한 견고한 고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기의 시험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하자 보수 등의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치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0m, 출입구 높이는 2.70m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조 변경 등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473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2대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북측 건물에 위치합니다. • 재활용창고는 지하주차장 지하1층 주출입구 하부에 위치합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공용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쿡탑에는 팬이 없으며, 덕트 계통이 상시 음압이 되도록 하는 공용 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S/W가 정문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어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총 14대(17인승 6대, 15인승 8대)로 아파트 12대, 사회적기업 1대, 옥외승강기 1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701동 10층(지붕층), 704동 15층(지붕층), 705동 18층(지붕층) 및 지하주차장 지하1,2층에 설치합니다. • 저층세대는 보안등(총 46개소 설치예정)으로 인해 세대내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화장실 급배수소음	★
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5.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가변성	★
2.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내구성	★
4.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주요구조부 재사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5.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비내력벽 재사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확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즈	★

5) 화재소방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6BL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문건설(주) 현대아산(주) 건희건설(주) 신동아종합건설(주) ㈜동산테크 ㈜지앤에스이엔지 ㈜평호전력 ㈜리치이엔씨 ㈜명민, ㈜현대설비 ㈜경원소방 ㈜파인우드		㈜건축사사무소 광장 ㈜GSM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창이엔이 ㈜신원기술단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1. 마루귀틀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전체
거실	2. 세대별로 시각경보기 설치	
	3. (비디오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4. 조명밝기 600~900lx	
부엌	5. 좌식싱크대	
	6.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침실	7. 조명밝기 300~400lx	
욕실	8.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9. 좌식 샤워시설	
	10.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table>
<tr><td rowspan="15">총자산</td><td rowspan="2">일반
자산</td><td rowspan="2">토지,
건축물
및
주택</td><td>-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td><td>- 지방세정 자료</td></tr>
<tr><td colspan="2">자동차</td><td>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td><td>-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td></tr>
<tr><td rowspan="7">기타
자산</td><td>임차보증금</td><td>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td><td>-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td></tr>
<tr><td>선박·항공기</td><td>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td><td>- 지방세정 자료</td></tr>
<tr><td>입목재산</td><td>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td><td>- 지방세정 자료</td></tr>
<tr><td>회원권</td><td>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td><td>- 지방세정 자료</td></tr>
<tr><td>조합원입주권</td><td>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td><td>- 지방세정 자료</td></tr>
<tr><td>어업권</td><td>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td><td>- 지방세정 자료</td></tr>
<tr><td>분양권</td><td>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td></tr>
<tr><td colspan="2" rowspan="2">금융자산</td><td>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td><td rowspan="2">- 금융정보 조회결과</td></tr>
<tr><td>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td></tr>
<tr><td colspan="2" rowspan="6">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td><td>금융기관 대출금</td><td rowspan="3">- 금융정보 조회결과</td></tr>
<tr><td>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td></tr>
<tr><td>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td></tr>
<tr><td>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td><td rowspan="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td></tr>
<tr><td>임대보증금</td></tr>
<tr><td>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td></tr>
<tr><td>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td></tr>
<tr><td colspan="2">자동차</td><td>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td><td>-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td></tr>
</table>

16.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2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